

통합 모듈식 서버보안· 관리 솔루션

Omniguard Next Generation
Server Security Solution



Omniguard는 계정관리, 접근제어, 세션로깅, 권한관리, 명령어통제, 보안자산 모니터 등의 기능을 모듈 별로 제공하여 선택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, OS 영향을 최소화하며 Kernel 수정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안정성을 보장하는 차세대 서버보안 솔루션입니다.

Omniguard 구동 프로세스



Overview

내부정보 유출 및 다양한 공격 증가

- 계정 공유로 보안성 측면의 책임 추적성 확보의 필요성 대두
- 시스템 주요 정보나 데이터의 무결성을 저해시키는 행위 제어 필요
- 시스템 접근에 대한 전사적 대응 방안 고민
- 시스템 별 대응방안 수립 필요

관리 업무 및 비용 증가

- 다양한 서버 및 관리 대상 증가
- 패스워드 및 자원에 관련한 문제의 신속한 해결 요구 증가
- 시스템 내의 보안 자산현황 관리의 중요성 증가

효율적인 계정 및 권한 관리 필요성 증가

- 계정의 수동 관리로 관리 및 패스워드 변경 시 업무 부담 증가
- 계정 사용의 현황 및 계정 보안 정책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
-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시스템 접근이나 불법 명령어 입력 등으로 보안사고 위험성 증가
- 세션에 대한 로그가 산재되어 장애 또는 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의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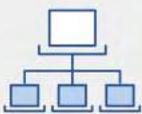
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 준수 및 감사 대응 필요

- 개인 정보의 기술적/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
- 전자금융감독규정
-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ISMS-P

Omniguard 기대효과



Omniguard 주요기능



취약점 통합 관리

- 이기종 서버 통합 관리
- 시스템 계정 정책 일괄 적용 및 모니터링
- 단일 웹 콘솔 제공



계정관리

- 이기종 서버 계정 생성 및 변경, 삭제 제공
- 패스워드 정책 관리
- 잠긴 계정 락(lock) 해제
- 관리 대상 계정들의 일괄 보안 정책 적용



세션로깅

- 세션 화면을 기록/재생가능한 형식으로 저장
- Windows: FTP/TELNET의 접속과 원격 터미널의 세션 로깅
- UNIX/LINUX: TELNET/SSH/XTERMSU/CONSOLE 접속 로깅
- 사용자가 접속한 세션 현황 제공



접근제어

- 서비스(TELNET/FTP/REXEC/REXEC/SSH/RLOGIN/CDE 등) 접근 제어
- 원격 터미널 및 포트 접근 제어(IP/사용자/그룹 별)
- 시스템 접근 시 OTP 인증 지원
- 정책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분배



명령어통제

-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위반된 명령어 제어
- 위반된 명령어 입력 시 다양한 차단 방법 제공 (세션차단, 명령취소, 메시지출력)
- 명령어 제어 정책 설정(사용자/그룹 별)



권한관리

- 권한을 위임하는 기능(사용자/그룹 별)
- 위임된 권한에 대한 사용이력 추적



보안자산모니터

- 파일/ 레지스트리 값 위변조 모니터링
- 네트워크 서비스 상태 모니터링
- 서버 환경정보, 소프트웨어 정보 모니터링

핵심 요소와 법규, 지침 매핑

| 핵심요소 | 주요 인증지침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| - 제 19조의 10(접근통제) 사용자 인증, 패스워드 관리,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등의 항목에서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/접근 사용자 인증/패스워드 복잡도 등의 통제 항목을 포함 |
|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PIMS | - 제 8조(기술적 보호조치) 법적요구사항,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취급자 및 사용자, 정보주체(이용자)의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 개인정보 및 개인 정보 처리시스템에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 통제하여야 한다. |
| 전자금융감독규정 | - 제 32조(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)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. - 제 13조(전산자료 보호대책)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등록·변경·폐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|

※ 관련법적근거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
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
금융위원회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